자동차대여이용계약서

Pick amazoncar! We'll pick you up.

	계약번호	S122KK7M00001	영업소	본사	영업담당자	윤기웅 차장 010-8874-4827				
	고객구분	개인사업자	대여구분	월렌트	관리담당자	황수연 차장 010-9116-3004 정비, 계약연장, 반납, 대여료, 사고처리 관련				
(○ 고객사항									
	서메/미ㅠㅜ	かかり		MI크립이	000310					

성명(대표자)	함창운 생년월일 800318									
상호	바벨글로비스 사업자등록번호 696-68-00359									
주소	서울 관악구 신림동 763-14(301호)									
운전면허번호	13-05-816294-21	연락처	전화번호	02-2138-7801						
비고		244	휴대폰	010-9940-4982						

	성명	생년월일	
추가운전자	주소		
구기군신자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기타		

◎ 대여차량 및 이용기간

차명	K7 LPG 3.0 LPI 럭시	리		차량번호	04호1556						
연료종류	LPG		누적주행거리	157,674km	추가대여품목						
	기간	1개월		차량이용용도							
이용기간	날짜	2022 - 01 - 05 ~ 2022 - 02 - 04									
	대여요금	금은 월단위로 산정하며, 1개월 미만을 일자정산하여야 할 경우에는 30일을 1개월로 봅니다.									

◎ 배차/반차 예정사항

배/반차 시간	배차	2022년 01월 05일 16시 22분	반차	2022년 02월 04일 (오전 9시~오후 5시) ※단, 공휴일 및 토요일은 오전9시~12시까지 반납가능 ※단, 일요일.설날(음력1월1일)및 추석당일 반납불가(익일반납)
및 장소	장소	영남주차장	장소	영남주차장 (02-6263-6378)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34길 9, 영남주차장

⊚ 대여요금

© ¶Ч#6												
구분		월대	여료		배/반차료	합계						
I E	차량	내비게이션	기타	-11/ 근 시 표	비계							
공급가	655,600	655,600 0			0	655,600						
부가세	65,560	0	0	65,560	0	65,560						
합계	721,160	0	721,160	0	721,160							
결제방법	대여료전액 선불 배/반차료는 선불입니다											
최조결제금액	721,160원, 대여료 총액											
비고	2회차부터의 대여요금은 해당 회차 대여시작일 하루전 날이 대여요금 결제일이 됩니다.											
자동이체	자동이체 방법											
신청	자동이체 대상	2회차부터의 C 초과운행대여회	내여요금, 연장대여요; 로	금, 연체이자, 중도해?	디정산금, 면책금, 과티	내료,						

© 보험사항 및 고객책임사항 (렌터카공제조합 사고접수 1661-7977, 긴급출동 마스타자동차관리 1588-6688)

운전자연령	운전자범위	보험가입내역	격(보상한도)	자기차량손해 사고시	
	(1)계약자 (2)계약서상 명시된	대인배상	무한 (대인배상 I ,표)	선택1. 자기차량손해 면책금(사고 건당) ☑ 30만원 / □ 기타()만원	선택2. 수리기간 동안
만26세	추가운전자	대물배상	1억원	, , , , ,	의 휴차보상료
이상	※ 계약자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임직원만 운전 가능 (임직원한정운전 특약 가입. 단,	자기신체사고 사망/장해 1억원 종합보험 가입보험사 약관에 준함. E 부상 1500만원 시에는 차량잔존가치[=신차가격×(1-		(별도의 당사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의거 보상-좌측의 종합보험 가입보험사 약관에 준함. 단,도난사고 발생 시에는 차량잔존가치[=신차가격×(1-(차령개월수×	☑ 고객부담 □ 면제
	경차 및 9인승차량은 특약 미가입)	무보험차상해	2억원	0.01))]의 20% 금액은 고객이 부담함.)	

※ 휴차보상 : 고객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 발생시, 대여차량의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아마존카 단기렌트 요금표 기준)의 50%를 고객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9조에 의함)

아마존카	대여차량	대여기간별 1일 요금 (부가세 포함)							
단기렌트	K7 3.0 LPI	1~2일	3~4일	5~6일	7일이상				
요금	N/ 3.0 El l	334,400원	301,400원	283,800원	267,300원				

◎ 기타계약조건

약정운행거리	4,000km / 1개월, 초과시 1km당 110원[부가세별도]의 초과운행대여료가 부과됩니다.(대여종료시)
유류대 정산	본 계약은 월렌트(장기계약)의 특성상 유류대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시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차량정비 사고발생시	1) 차량의 임차기간 중 발생되는 주정차 위반 및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등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차량 이용 중 정비(고장수리, 엔진오일 교환 등)가 필요한 경우 필히 아마존카 관리담당자에게 연락하여야 하며, 차량 정비시 아마존카 지정정비업체로 직접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정비비는 아마존카에서 지불하며, 개인비용으로 처리시 비용처리가 안됩니다. 3) 차량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필히 아마존카 관리담당자에게 연락하여야 합니다.
계약 연장	1) 연장계약은 임차인이 유선상으로 계약기간연장 의사를 표시하고 아마존카가 승인한 후 연장대여료가 결제되면 확정됩니다. 2) 임차인은 계약연장을 희망할 경우 계약만료 7일전(2022-01-28)까지 아마존카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3) 연장대여요금은 연장대여시작일 하루전에 신용카드 자동출금 또는 CMS 자동이체로 아마존카가 출금합니다. 연장 대여시작일 하루전까지 대여요금이 결제되지 않으면 계약연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월단위 연장계약을 해야 연장기간 만료시 추가 연장 요청이 가능합니다. 5) 일자단위로 연장계약시 전월 대여료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적용되며,연장기간 만료시 추가연장이 불가능합니다. ※ 계약연장 희망시 고객님께서 먼저 아마존카로 연락하셔야 하며, 고객님의 연락이 없으면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아마존카 계약연장담당자: 황수연 차장 010-9116-3004)
대여료 연체시	1) 대여료 연체시에는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때 임차인은 차량을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2) 대여료 연체시 년리 24%의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중도해지시	1) 실이용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2) 실이용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 아래 명시된 요금정산 방법을 따릅니다.
기타 특이사항	

※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에 의합니다.

◎ 실이용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의 요금정산 (아래 기준에 의거 이용일 수 만큼의 대여료가 적용됩니다.) ※ 기준:일, %

이용일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월대여료 대비적용율	31	37	42	46	50	53	56	59	62	64	66	69	71	73	75	77	79	81	83	84	86	88	89	91	93	94	96	97	99	100

2022년 01월 05일 대여제공자(임대인) 대여이용자 (임차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802호(여의도동, 태흥<u>빌</u>딩) 본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1통을 정히 수령함. 위 대여이용자 hi 바벨글로비스 함창운 (주)아마존카 대표이사 직 위 본 대리인은 위 "자동차대여이용계약"에 대하여 그 내용을 숙지 대리인 생년월일 하고 임차인을 대리하여 (주)아마존카와 본 계약을 체결합니다. 성 명 (서명)

신용카드 자동출금 이용신청서(☑ 신규□ 변경□ 해지)

- ※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규정(시행령 10조)에 의거, 자동이체 신청시에는 반드시 <mark>서면/공인인증서/녹취</mark>를 통한 예금주/카드주/휴대폰명의자 본 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 신용카드 이용시 카드이용내역서상에 카드사에 따라 결제대행기관인 **나이스** 또는 **나이스(올더게이트)**의 이름으로 청구될 수 있으며, 계좌 출금시에는 통장 내역에 수납기관이 지정한 **통장기재내역**으로 6자 이내 표시 됩니다.
- ◆ 수납기관 및 요금정보(수납기관 기재란)

수납기관명	자동이체사유	금액	비고
㈜아마존카	월대여료,연체이자,해지정산금,면책금,과태료, 초과운행대여료	0원	

★ 납부자 정보 (수납기관 기재란)

납부자 번호(고객번호)	이체개시 년 월	지정 출금일
S 1 2 2 K K 7 M 0 0 0 0 1	2022년 02월	매월 04일

◈ 신청인 정보 입력

<u> </u>			
신청인 성명	바벨글로비스	이메일	ham1820@naver.com
주 소	(08864)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 763-14 301호	
연락처	02-2138-7801	휴대폰번호	010-9940-4982
결제수단 선택	신용카드		
카드사	삼성카드	사업자번호(사업자인경우)	6966800359
카드주 본인명	바벨글로비스	카드번호	3791 - 8369 - 7693 - 973
카드주 본인 주민번호 앞 6자리	800318 - *****	카드유효기간	06 / 26 (월/년) * 카드선택시

- ※ 법인공용카드, 선불카드, 해외발행카드 등 일부 카드는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 연체, 잔액부족 등의 사유로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십시오.

<u> 자동이체 서비스 이용 약관</u>

- 1. 이용자는 본 신청서에 서명하거나 공인인증 및 그에 준하는 전자 인증절차를 통함으로써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가 제출한 지급결제수단 정보를 해당 금융기관(통신사 포함)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3. 자동이체 개시일을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경우 재화 등을 공급하는 자로부터 사전 통지 받은 납기일을 최초 개시일로 하여, 출금은 이용업체 와 협의한 날짜에 계좌출금이 이루어 집니다.
- 4. 출금이체 금액은 해당 지정 출금일 영업 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 처리 되며, 출금이체 금액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업체에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 5. 납기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 이체 우선 순위는 이용자의 거래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6. 자동이체 납부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 납우일로 합니다.
- 7. 이용자가 자동이체 신청(신규, 해지, 변경)을 원하는 경우 해당 납기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8. 이용자가 제출한 지급결제수단의 잔액(예금한도, 신용한도 등)이 예정 결제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지급제한, 연체 등 납부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9. 이용자가 금융기관 및 회사가 정하는 기간 동안 자동이체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사전 통지 후 자동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0. 회사는 이용자와의 자동이체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본 약관과는 별도로 자동이체서비스이용약관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1. 수집 및 이용목적 : 나이스정보통신(주) 자동이체서비스를 통한 요금 수납, 민원처리 및 상담요청 응답
- 2. 수집항목: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주민번호앞6자리, 카드번호, 카드사, 카드주, 카드유효기간, 이메일
- 3.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부터 자동이체서비스 종료일(해지일)까지며, 보유는 해지일로부터 5년간 보존 후 파기(관계 법령에 의거)
-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서비스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u>개인정보 취급 위탁</u>

- 1. 결제(자동이체)서비스를 통한 요금 수납, 관련 민원처리 및 상담요청 응답을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 업무을 나이스정보통신(주)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 2. 위탁 계약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정성 확보 조치,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한 계약을 서면 보관하고 있습니다.
- 3. 위탁 업체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업체 명을 인터넷홈페이지, SMS, 전자우편, 서명,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문자(SMS)발송 동의

1. 자동이체 동의 및 처리결과 안내(휴대폰 문자전송)송부에 동의합니다.

상기 자동이체 신청과 관련하여 카드주명의자로서 자동이체이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동의, 문자(SMS)발송에 동의하며, 자동출금이체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22년 01월 05일

신청인 <u>바벨글로비스</u> (인) <u>부선명</u> 카드주 동의란 <u>바벨글로비스 (인) 또 선명</u>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운전자의 운전자격 확인 포함)

Pick amazoncar! We'll pick you up.

㈜아마존카 귀하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조회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본 계약상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운전자의 운전자격 확인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 래 -

구 분	내 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수집·이용 목적 : 자동차 대여이용(또는 시설대여)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요금정산 (대여료 결제, 세금계산서 발송, 대여료 추심 등), 차량이용 중 발생된 과태료, 범칙금, 통행료, 주차료 등의 납부자변경, 운전자격 확인, 차량 탁송,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등의 수검, 디지털 키 사용자 등록, 테슬라 차량 이용고객 모바일 앱 ID 생성, 전기차 보조금 관련 일부 지자체 고객주소지 확인, 차량 리콜 관련 통지 및 조치 등
☑ 동의함 □ 동의안함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E-mail, 자동이체 계좌번호, 직업, 소득 및 재산정도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상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존 후 파기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안함	·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운전면허증 사본 포함),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는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세금계산서 발행 목적으로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 동의함 □ 동의안함	(1)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 제공 대상 기관 : 신용도 회치사 (코리아크레딧뷰로㈜) · 제공목적 : 신용도 평가, 실명확인 등 신용조회회사의 업무 · 제공목적 : 신용도 평가, 실명확인 등 신용조회회사의 업무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국적, 직업, 연락처 등) - 신용자대정보 (자동차 대여이용(또는 시설대여) 정보, 대여료 불입정보 등) - 신용자대정보 (자동차 대여이용(또는 시설대여) 정보, 대여료 불입정보 등) · 신용자 판단정보(전체, 부도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용조회 업무 목적 달성시 까지 (2) 거래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1) 제공 대상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 내용 (3) 차량 사고의 처리 및 보험 보상, 보험금 지급·심사, 보험계약 체결, 대차료 청구 등을 위하여 가해차량 보험회사 및 본 대여 차량 가입 보험회사(렌터카공제조합, 동부화재, 삼성화재 등)에 자동차 대여이용(또는 시설대여) 계약서 사본 제공 ② 차량 구매자금 대출 실행을 위하여 해당 급용사에 본 자동차 대여이용(또는 시설대여) 계약서 사본 제공 ③ 차량 이용 중 발생된 과태료, 범칙금, 통행료, 주차료 등의 납부자 변경을 위하여 해당 관공서 및 도로 관리 기관 등에 본 자동차 대여이용(또는 시설대여) 계약서 사본 제공 ④ 차량 학송을 위하여 탁송사에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제공 ⑤ 자동차 정기 · 종합검사 등 검사 대행을 위하여 대행업체에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제공 ⑥ 디지털 키 사양 선택시 사용자 등록을 위하여 제조사에 사용자 성명(또는 법인명), 연락처, 이용 기간을 제공. (단, 계약만료 또는 계약 해지시 사용자 정보를 삭제) ⑦ 테슬라 차량 이용고객 모바일 앱 ID 생성을 위하여 성명,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를 테슬라에 제공 ⑥ 전기차 보조금 관련 고객주소지 확인이 필요한 일부 지자체에 자동차 대여이용(또는 시설대여) 계약서 사본 및 고객주소지 식별이 가능한 필요서류 제공 ⑥ 차량 리콜 관련 통지 및 조치를 위하여 성명, 판소 연락처를 제조사나 국토교통부(산하기관포함) 등에 제공 ⑥ 차량 리콜 관련 통지 및 조치를 위하여 성명(또는 법인명), 주소, 연락처를 제조사나 국토교통부(산하기관포함) 등에 제공 ⑥ 차량 리콜 관련 통지 및 조치를 위하여 성명(또는 법인명), 주소, 연락처를 제조사나 국토교통부(산하기관포함) 등에 제공 ⑥ 차량 리콜 관련 통지 및 조치를 위하여 성명(또는 법인명), 주소, 연락처를 제조사나 국토교통부(산하기관포함) 등에 제공 ⑥ 차량 리콜 관련 통지 및 조치를 위하여 성명(또는 법인명), 주소, 연락처를 제조사나 국토교통부(산하기관포함) 등에 제공 ⑥ 차량 리콜 관련 통지 및 조치를 위하여 성명(또는 법인명), 주소, 연락처를 제조사나 국토교통부(산하기관포함) 등에 제공 ⑥ 차량 리콜 관련 통지 및 조치를 위하여 성명(또는 법인명), 주소, 연락처를 제조사나 국토교통부(산하기관포함) 등에 제공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	· 조회할 신용정보 : 식별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용도 판단정보(연체, 부도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카드개설/신용개설정보 등), 신용등급 등 · 조회목적 : 자동차 대여이용(또는 시설대여) 계약 체결여부 결정 및 유지여부 판단, 연체관리 등을 위하여 조회 · 조회동의 효력기간 : 동의서 제출시부터 당해 계약의 효력이 종료하는 시점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되며, 이 동의는 본 계약의 갱신이나 추가 계약의 체결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조의 동의 V 동의함 S의안함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에 의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의거 신용등급이 하락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지의무 때문에 부득이 알려드리오나, 실제 2011.10.4부터 개인신용정보 조회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타 금융기관 등에 조회정보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① 2011.4.1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 참조 ② 2011.10.4부터 조회기록은 무등급자에 대한 신용등급 부여, 금융사기 방지 목적으로만 예외적으로 활용하고 그 외 모든 조회기록의 신용평가 반영을 금지하고, 조회정보 제공을 금지함
운전자의 운전자격 ☑ 있음 ☐ 없음	자동차 대여이용(또는 시설대여) 계약상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지 아니하였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등에 따른 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 상의 운전면허증 반납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본 계약상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위·변조 하지 않았고, 도로교통법상 운행 가능한 차종별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없음	

※ 개인(신용)정보 관련 각 항목은 필수 동의사항으로 동의가 없을 경우, 자동차 대여이용(또는 시설대여)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어 부득이 계약 체결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각 항목 □동의함 에 체크를 해주셔야 계약진행이 가능합니다.

2022년 01월 05일

성명: 함창운

ti

자동차대여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2021.10.29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대여용자동차 임대인(이하 "회사"라 합니다)과 임차인(이하 "고객"이라 합 니다) 사이의 대여용자동차 임대차계약(이하 "대여계약"이라 합니다)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장 대 여 계 약

제2조(예약의 체결) ①대여용자동차(이하 "렌터카"라 합니다)를 임차하려는 자는 미리 차종. 대여요 금, 지연손해금, 임차예정일시, 임차장소, 임차기간, 반환장소, 운전자, 기타 임차조건 등을 확인하 여 예약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대여예정요금의 10%범위 내에서 예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고객이 예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제3조(예약의 취소) ①임차예정 시간을 1시간 이상 경과하여도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예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②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예정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약 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 ③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예정일시 직전 24시간 내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반환하 지 아니한니다
- ④회사는 예약금을 수령한 후 회사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경 우에는 고객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예약금의 배액을 지급합니다.
- ⑤제2조에 따른 예약을 한 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회사는 예약금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제4조(대여계약의 체결) ①대여계약의 체결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며, 임대차계약서에는 제2조 제1항 에서 열거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②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받은 예약금을 반환합니다.
 - 1. 고객(고객 아닌 자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인 경우에는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렌터카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운전자격 확인에 고 객이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회사는 사고발생의 빈도 및 보험적용요율 등을 감안하여 고 객의 연령 및 운전경력 등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2.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의 질문 및 자료요구에 불응할 때
- 3. 고객이 음주상태에 있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중독되었다고 판단될 때
- 4. 예약 당시 결정한 운전자와 렌터카 인수시의 운전자가 다를 때
- 5. 과거 렌터카 대여와 관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또는 대여요금, 면책금, 수리 비 등의 체납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 6. 과거 렌터카 대여와 관련하여 제15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 7.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제5조(렌터카의 대체) ①회사는 고객이 예약한 차종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사 한 다른 차종의 렌터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②제1항에 의한 대체 렌터카의 대여요금이 예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비싼 경우에는 예약차종의 대 여요금을, 예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싼 경우에는 대체 렌터카의 대여요금을 각 적용합니다.
- ③고객은 제1항에 의한 대체 렌터카의 임차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예약금 전 액을 반환합니다.

제6조(요금의 수령방법 등) ①고객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대여요금을 선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 사와 고객은 대여요금을 분납하거나 사용 후에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 ②고객의 요구로 인하여 대여요금 외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은 그 추가비용을 부 담하여야 합니다.
- ③고객은 임차기간을 초과하여 렌터카를 사용한 경우에는 렌터카 반환시추가로 대여요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제7조(회사의 대여계약 해지)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 1. 고객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할 때
- 2. 계약 당시 고객의 개인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때
- 3. 대여요금을 분할납부하기로 한 경우로서 대여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2기의 대여요금에 달한 때
- 4. 고객(고객 아닌 자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인 경우에는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5. 고객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 6. 렌터카 대여 후 고객이 음주운전을 한 때
- 7. 렌터카 대여 후 고객이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한 때
-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고객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 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제173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 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한 경우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한다)가 운 전을 한 때
- 9. 제15조의 금지행위를 한 때
-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대여요금(고 객이 실제 납부한 요금을 말한다)을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고객은 렌터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8조(고객의 대여계약 해지) ①고객은 렌터카 인도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 는 때에는 제20조 제3항에 의한 조치를 받거나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제1항에 따라 대여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수령한 대여요금 전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③고객은 임차기간 중이라도 회사와 합의하여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대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상당액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의 경우 회사와 고객은 회사의 손실을 고 려하여 중도해지시의 수수료를 별도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 ⑤고객의 귀책사유로 렌터카의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 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대여계약 해지) ①임차기간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여계약은 종료되며, 고객은 이와 같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②제1항에 의하여 대여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계약이 종료된 때까지 의 대여요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 ③고객이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렌터카를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이로 인 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객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 시 회사에 연락하고, 회사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④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거나 대체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고객은 회사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0조(임차조건의 변경) ①고객이 대여계약의 체결 후 임차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②고객이 임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지 불하여야 합니다.
- ③회사는 변경된 임차조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3 장 보험 및 점검 등

제11조(보험가입 등) ①회사는 고객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자동차보험약 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

②고객은 차량사고 발생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 또는 회사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계약체결시 고객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점검표 작성 등) ①회사는 고객과 함께 별표의 점검표에 의해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전기와 수소를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량, 타이어, 와이퍼, 라이트, 사이드미러, 윈도우, 안전벨트 등을 점검한 후 렌터카를 인도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따른 렌터카 인도 전 점검 또는 회사가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시 렌터 카의 정비불량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리 또는 부품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기록 • 유지하여야 하며, 고객이 요청할 경우 그 조치의 시기와 내용을 고객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합니다.

제 4 장 책 임

제13조(고객의 점검의무) ①고객은 임차기간 중 렌터카를 사용하기 전에 타이어나 차체의 외관상 태 및 시동 후 엔진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②고객은 제1항의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고객은 회사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자동차종합검사 또는 자동차 결함 시정조 치(리콜) 이행을 위한 협조요청에 적극 따릅니다

제14조(고객의 관리책임) 고객은 렌터카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회사에 반화하는 시점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렌터카를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15조(금지행위) 고객은 임차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1. 렌터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2. 렌터카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 3. 렌터카의 차량번호판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 4.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렌터카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견인에 준하는 행위
- 5.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6.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고객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 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제173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한 경우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한다) 또는 무면 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 7.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 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을 렌터카의 연료로 사용 하는 행위
- 9.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렌터카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제16조(배상책임) ①고객은 임차기간 중 제15조에 해당하는 행위 기타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 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고객이 임차기간 중 주정차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과태료와 범칙금 및 주차료 등은 렌터카 반환 후에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5 장 자동차 사고의 조치 등

제17조(사고처리) ①고객은 렌터카 임차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부상자 후송 및 경찰서 신고 등 도로교통법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 1. 사고상황 등을 회사에 즉시 통보
- 2.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의 제출
- 3. 사고와 관련하여 제3자와 합의 또는 협의를 할 경우 사전에 회사와 협의
- 4. 렌터카의 수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공장 또는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자동차종합정비업체 등에 수리 의뢰
- ②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수리 후에는 소요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객이 요청하면 수리내역 증빙자료(수리 전 정비견적서, 수리 후 정비명세서)를 제공합니다
- ③회사는 고객과 협의하여 고객이 차량을 수리한 경우 차량 정비내역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④고객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거나 회사와 협의되지 아니한 곳으로 렌터카를 이동, 견인, 수리 등을 행하여 렌터카 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어 재수리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⑤회사와 고객은 사고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협조를 태만히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18조(보험처리 등) ①고객은 사고발생시 회사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및 제11조 제2항에 의한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합니다.

- 1. 고의로 인한 손해
- 2.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 3. 영리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4. 범죄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
- 5.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 6.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7. 렌터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고객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제173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한 경우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한다)가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②고객은 제1항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또는 회사(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에 대여자동차의 손해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 고객이 납부하는 자기부담금(제19조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는 휴차손해는 제외)은 렌터카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한도로 합니다.
- ③고객이 제11조 제2항의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된 경우 고객은 사고당시 차량기준가액 등을 기준으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④제11조 제2항의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의한 보장금액이 고객의 배상책임금액보다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액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⑤대여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고객이 회사에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생긴 사고는 회사의 자동차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그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9조(휴차손해 등 부담) ②고객은 고객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에는 그 수리기간의 영업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렌터카가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도난된 경우에는 렌터카의 재구매 및 등록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고객이 부담할 손해액을 정하는 경우 동종차량의 대여요금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③회사가 제2항에 의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수리기간 또는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때 대여요금은 수리기간 또는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일일대여요금(고객이 실제 납부한 요금을 말하다)을 기준으로 사정합니다.

제20조(고객의 렌터카 이상 또는 고장 발견시 조치) ③고객은 임차 중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회사에 연락하고 그 처리방향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 ②고객의 고의·과실로 렌터카의 이상이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③렌터카 인도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렌터카를 사용 불능하게 되거나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고객은 회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④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대여요금을 반환하고, 렌터카 회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제 6 장 반 환

제21조(렌터카의 반환시기 등) 고객은 약정한 대여기간 종료시점 또는 대여계약 중도해지시에 렌터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2조(렌터카의 확인 등) ①고객은 렌터카를 회사에 반환할 때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인수시 확인한 상태 그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②회사는 렌터카 반환 시 고객의 입회하에 렌터카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 ③회사가 렌터카를 반환받을 때에는 고객 입회하에 렌터카 내의 고객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의 잔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 ④회사와 고객은 렌터카 반환.회수시 잔여 연료량의 과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서로 정산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고객이 렌터카를 반환할 때의 연료량이 임대시의 연료량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요청할 수 있고 고객은 반환시의 연료량이 임차시의 연료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회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료 정산의 편의와 정확성을 위해 회사가 연료탱크에 연료를 100% 채워 인도하는 경우 고객은 연료탱크에 연료를 100% 채워 반환합니다.

제23조(렌터카의 반환장소 등) ①고객은 약정한 반환장소에서 렌터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반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의 반환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반환장소가 변경되어 렌터카회수에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4조(렌터카 미반환에 대한 조치) ①회사는 고객이 대여기간 종료시로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도 반환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렌터카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②회사는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렌터카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조사를 할 수 있으며, 차량위치정보시스템의 작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렌터카 대여시 차량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한 자동차를 대여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③회사는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여기간 종료시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렌터카와 고객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렌터카와 고객의 소재가 불명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④고객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렌터카 회수 및 고객·운전자의 소재확인 등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동종 또는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시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제3자 제공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동종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고객이 회사의 렌터카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렌터카 반환일로부터 익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2. 고객이 대여요금을 연체하여 회사가 상당기간 동안 2회 이상 납부를 최고하였음에도 계속 연체하고 있는 경우. 단, 고객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3. 렌터카를 불법 매매 또는 개조한 경우
- 4. 차량번호판 위조 또는 범죄에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이용한 경우
- 5. 렌터카를 전대, 담보제공 또는 매각하는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 6. 교통사고 후 도주 또는 렌터카를 방치한 경우
- 7. 렌터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고객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제173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한 경우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한다) 및 무면허운전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 9. 렌터카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 경기에 사용한 경우
- 10. 다른 차를 견인 혹은 견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1.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 ⑥회사는 고객이 임차기간 중 주정차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정수를 위하여 계약시 수집ㆍ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제3자 제공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과태료와 범칙금의 부과 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⑦회사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고객의 정보를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⑧회사가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7 장 보 칙

제25조(지연손해금) 회사와 고객은 이 약관에 따른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상사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26조(계약의 세칙) 회사는 이 약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고객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세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27조(신용조회) 회사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대여계약 체결 전 신용정보기관을 통하여 고객의 신용상태를 조회ㆍ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8조(관할법원) 이 약관의 해석과 이에 근거한 대여계약에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회사와 고객이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